

問：殘存物の 除去費用은 火災保險에서 補償받을 수 있음 니까? 또한 이에 대한 所有權은 누가 갖는지요?

答：殘存物の 所有者는 通常 被保險者이며, 殘存物の 除去費用은 保險에서 補償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殘存物の 除去費用에 대한 保險의 責任

建物이 全燒되어 保險會社가 그 損害에 대하여 補償하였어도 被保險者는 殘存物の 除去費用, 즉 建物이 타나남은 殘木, 殘土, 그밖의 타나남은 商品等을 燒却場에 運搬하여 燒却處分하지 않으면 안되는 費用等 여러가지 殘存物을 除去하는데 要하는 費用의 損害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殘存物の 除去費用은 保險의 目的인 商品自體의 物的損害가 아니고 間接적으로 發生한 費用損害임으로 火災保險에서는 補償되지 않는 것입니다. 保險會社가 補償하는 것은 保險의 目的에 發生한 損害에 限定되어 있으며 殘存物の 除去費用은 被保險者側의 負擔이 되는 것입니다.

2. 殘存物の 所有權

商法 第681條는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

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殘存物에 對한 所有權이 保險金의 支給과 함께 法律上 當然히 保險會社에 移轉하게 되면 殘存物이 第3者에게 損害을 끼쳐 賠償義務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殘存物 處分에 必要한 費用이 殘存物 買上代金을 超過한다든지 하여 保險會社가 意外의 負擔을 가져오는 境遇가 있으므로 火災保險 普通約款 第17條는 「會社가 殘存物을 引受하지

相 談 코 너

火 災 保 險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損害를 補償한 境遇에는 그 殘存物은 被保險者의 所有가 됩니다」라고 規定하여 商法의 規定을 變更하고 있습니다. 保險會社는 이러한 規定에 의하여 殘存物을 引受하지 않고 處理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通常 殘存物の 所有權은 被保險者에게 歸屬됩니다.

3. 保險代位規定

保險會社는 保險의 目的이 全燒하여 保險의 目的에 對한 保險金額 全額이 支給된 때에

는 殘存物을 取得할 權利가 있게 된다. 이는 商法 第681條의 保險 代位 規定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

殘存物の 取得은 即,

① Principle of Indemnity

② Theory of Indemnity

③ Salvage Principle

④ Principle of Subrogation

에 따른 補償原則에 相當한 比重을 두고 있다.

一般保險에 있어서 保險會社의 殘存物 取得比率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依하여 配分取得할 수 있는 바 殘存物 取得에 關係한 必要했던 費用은 保險會社가 支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取得에 關係없는 費用은 保險會社가 負擔하지 아니한다.

殘存物上의 權利取得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原則에 따르겠지만 要는 그 殘存物の 價額이 全損害價額에 對한 比重 또는 殘存物の 利用度에 따라 保險會社는 이를 取得할 것인지의 여부를 決定한다.

原則으로는 保險會社에 歸屬되는 權利이지만 僅少價額의 殘存物, 利用度, 稀薄한 殘存物, 整理費用相當의 價額物, 或은 其他 事情等을 參照하여 이를 拋棄할 때는 그 殘存物上의 權利는 被保險者에 歸屬합니다. *

車 塚 鐵

〈本協會 業務部・代理〉